

NAJU
*Web
Contents*

2021년 09월 28일 11시 37분

목차

목차	2
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구비서류	3
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	3
관련법	3
처리방법	3

🍷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

▶ 관련법

- 식품위생법 제37조 (영업의 허가 등)
-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(영업의 신고)

▶ 처리방법

구분	식품제조·가공업
건축물의 용도	▪ 근린생활시설,공장
토지이용 계획 제한 사항	▪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 ▪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너비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 ▪ 녹지지역 불가
구비서류 (대표자 방문 시) ※ 대리인방문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,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※ 법인인 경우 법인서류 별도	▪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▪ 건강진단결과서 ▪ 교육 수료증 (한국식품산업협회-업종“식품제조·가공업”온라인교육 받은 후 수료증 출력) ▪ 제조방법설명서 ▪ 임대차계약서 ▪ 대표자 신분증
※ 법인서류 :법인등기부등본,법인인감증명서,법인도장	
시설기준	별첨
처리절차	신청서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→ 등록증발급[처리기간: 3일]
수수료	- 수수료: 28,000원 -면허세: 15,000원

※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 품목보고는“식품안전나라”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NAJU

Web Contents

